##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7 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소병훈·허 영·김교흥

서삼석 • 박지원 • 조계원

정동영 • 이수진 • 이병진

안호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, 군무원, 군적을 가진 군(軍)의 학교의 학생 등, 예비역·보충역 및 전 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 ·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74조제1항은 "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"라고 명시하고, 「국군조직법」 제6조도 "대통령은 헌법,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"고 하고 있으며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에서도 "이 법에서 '상관'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"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"작당(作黨)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"를 반란죄로서 「형법」상 "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"인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, 반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이아닌 내국인·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,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·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것임(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 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군통수권자
- 1. 제5조 및 제6조의 죄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적용대상자) ①・② (생	제1조(적용대상자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	
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<u>1. 국군통수권자</u>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	$2. \sim 4.$ (현행 제 $1$ 호부터 제 $3$
	호까지와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・	
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	
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1. 제5조 및 제6조의 죄
<u>1.</u> ~ <u>13.</u> (생 략)	$2. \sim 14.$ (현행 제 $1$ 호부터 제 $1$
	3호까지와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